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45

발의연월일: 2020. 7. 7.

발 의 자: 정희용・추경호・金炳旭

태영호 · 한무경 · 윤재옥

김희곤 · 지성호 · 유두현

안병길 · 정진석 · 이헌승

이명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거공보 제작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일부 내용만 발췌하여 점자형 선거공보가 제작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은 선거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비장애인과동일하게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고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4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를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초과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6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6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거나 점 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현행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생 략) 과 같음)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 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 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 -----제2항에 따른 책 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 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초과하 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 여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 <단서 삭제> 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 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 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 ③ (현행과 같음) ⑤ ~ ③ (생 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1. 2. (생략)
- 3. 제65조제4항단서를 위반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3의2. ~ 5. (생략)

④ ~ ⑫ (생 략)

3	

- 1. 2. (현행과 같음)
- 3. 제6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점
 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
 하거나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3의2. ~ 5. (현행과 같음)
 ④ ~ ① (현행과 같음)